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49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전진숙・김용만・이수진

남인순 • 박지원 • 박해철

서미화 · 권향엽 · 김 윤

정혜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을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보통의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사자명예훼손의 죄는 친고죄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4년 연말의 여객기 사고 및 과거의 세월호 참사나이태원 참사 등 여러 사회적 재난 발생 시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명예훼손성 2차 가해가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 가해수단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그 형량 역시 낮으며, 사자명예훼손죄의경우 처벌에 유가족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한 친고죄로 되어 있는 등, 그 피해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가해 수단의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상향하며 사자명예훼손죄를 기존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명예훼손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9조제1항 및 제312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의 발간 또는 방송의 송출
-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 게시 또는 상영
- 3.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에서의 공연한 발언 제31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 告訴가"를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로, "公訴를"을 "공소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第307條와 第309條의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을 "제307조부터 제309조까지의 죄는 피해자(제308조의 경우 그 유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로 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적용례) 제3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308조의 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第309條(出版物 等에 依한 名譽毀損) ①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新聞,雜誌 또는 라디오 其他 出版物에 依하여 第307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생략)

第312條(告訴와 被害者의 意思)①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수 있다.

②第307條와第309條의罪는被害者의明示한意思에反하여公訴를제기할수없다.

개 정 안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게시 또는 상영

의 발간 또는 방송의 송출

- 3.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 집회·가두연설에서의 공연한 발언
- ② (현행과 같음)

②제307조부터 제309조까지의 최는 피해자(제308조의 경우 그 유족)의 명시한 의사에 반 하여 공소를-----